예산총칙

예 산 총 칙

2018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	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	합 계	257,736,711	7,732,101
일반회계		243,336,098	7,300,083
특별회계		14,400,613	432,018
	공기업특별회계	6,571,614	197, 148
	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	6,571,614	197,148
	- 기타특별회계	7,828,999	234,870
	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	42,127	1,264
	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	348,388	10,452
	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706,284	21,189
	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	1,355,400	40,662
	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2,311,400	69,342
	하수도사업특별회계	3,065,400	91,962

- 제 2조 세입.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.세출 예산"과 같다.
- 제 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"없음"
- 제 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 조서"와 같다.
-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 조서"와 같다.
-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,310,250천원으로 한다.
- 제 7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,900,000천원으로 한다.
-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